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1. 9. 22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9. 1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9. 11.
- 다. 상정일자 : 제82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1.9.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이 우리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중, 구에서 자체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해진 일부 용어 및 인용 법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해진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일부 용어 및 부적절한 인용 법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 장애인 등이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용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서 제출하는 서류중 주민등록등본등 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 규정을 폐지함. (안 제4조)
-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용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3. 근거법령

- (1) 장애인복지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8조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22조
-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1.1.16 법률 제6372호) 제2조등
-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5호) 제2조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및 식용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중 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서류를 완화함은 물론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른 일부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용어를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4조에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등 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며,
안제5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음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 생활용품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 배려도록 하였는 바, 2001년 9월 1일 현재 구와 동청사, 마포개발공사에 설치된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는 총 31대이나 동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에게 설치 계약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 IMF 체제후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등에게 보다 철저한 지원시책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공공시설의 범위는?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청사 및 동사무소, 마포개발공사 청사임.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공공시설내에 설치된 식음료용 자판기의 설치 대수는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31대임.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공공시설내에 설치된 식음료용자판기는 허가된 사항인가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식음료용자판기의 설치는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으로서 신고부서인 산업위생과에서 신고 처리한 숫자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기준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왜 개정하는것인가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것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기 바람.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하겠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 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1.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이 우리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중, 구에서 자체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해진 일부 용어 및 인용 법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불합리해진 용어 및 부적절한 인용 법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 나. 장애인 등이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시 제출하는 서류중 주민등록등본 등 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 규정을 폐지함. (안 제4조)
- 다.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3. 근거법령

- 가. 장애인복지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8조
-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22조
- 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1.1.16 법률 제6372호) 제2조등
- 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5호) 제2조등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9. 7 법률 제6024호) 제2조등

4. 조례(안) : 불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1.5.31 ~ 2001.6.1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1. 6. 2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하고, 동조증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독립유공자유가족은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여부는 구에서 직접 확인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관련 별표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 표]

장애인등 2연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유가족
1	장애등급 1~2급 으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 급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 급자
2	장애등급 3~4급 으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 과세 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 의 보호대상 모 자가정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 으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 과세 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u>26조</u>,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u>15조</u>,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신청)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 (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제<u>38조</u>,-----</p> <p>-----</p> <p>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서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독립유공자유가족은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여부는 구에서 직접 확인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 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p>	<p>제5조(우선계약) ①-----</p> <p>-----</p> <p>-----</p> <p>-----</p> <p>-----</p> <p>-----</p> <p>-----</p> <p>-----</p>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